

『퇴직연금연계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퇴직연금연계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분	내용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				
상품유형	• 정기예금												
거래방법	• 신규 : 영업점 • 해지 : 영업점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제한없음												
계약기간	• 1개월 이상 이상 36개월 이하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시 이자를 단리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												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												
적용 이자율	• 예금 신규일 기준 고객에게 안내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								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	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계약일수 / 365일												
중도해지이자율 (2023.07.13 기준, 세금공제전)	<table> <tr> <th>예치기간</th><th>중도해지이율</th></tr> <tr> <td>1개월미만</td><td rowspan="3">(약정이율*0.5)*(경과일수/계약일수)</td></tr> <tr> <td>1개월이상 - 3개월미만</td></tr> <tr> <td>3개월이상 - 6개월미만</td></tr> <tr> <td>6개월이상 - 9개월미만</td><td>(약정이율*0.7)*(경과일수/계약일수)</td></tr> <tr> <td>9개월이상 - 11개월미만</td><td>(약정이율*0.8)*(경과일수/계약일수)</td></tr> <tr> <td>11개월이상</td><td>(약정이율*0.9)*(경과일수/계약일수)</td></tr> </table>	예치기간	중도해지이율	1개월미만	(약정이율*0.5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1개월이상 - 3개월미만	3개월이상 - 6개월미만	6개월이상 - 9개월미만	(약정이율*0.7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9개월이상 - 11개월미만	(약정이율*0.8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11개월이상	(약정이율*0.9)*(경과일수/계약일수)
예치기간	중도해지이율												
1개월미만	(약정이율*0.5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											
1개월이상 - 3개월미만													
3개월이상 - 6개월미만													
6개월이상 - 9개월미만	(약정이율*0.7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											
9개월이상 - 11개월미만	(약정이율*0.8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											
11개월이상	(약정이율*0.9)*(경과일수/계약일수)												

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	• 신규가입일로 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•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약정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 적용	
예금자보호여부	DB 	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추가입금	불가능	
부분인출	불가능	
세제혜택	불가능	세금우대 및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불가능
양도 및 담보제공	•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양도 및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지급 정지, 상계등불가	
위법계약해지권	•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 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	
자료열람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 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 한 자료 •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 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
계약해지방법	• 영업점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며, 일부해지 불가능 •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 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. •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	

3

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
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

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상품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금융기관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금융기관부(02-3788-6686) 또는 영업부(02-3788-6617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<https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부 록 **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**

용어	설명
압류	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: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경과일수	(해당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일수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일수